



17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 보고

제108회기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위원장 임재호
서 기 소재열

1. 조직

1) 임 원

- 위원장: 임재호
- 서 기: 소재열
- 회 계: 하태묵
- 총 무: 김양흡

2) 위 원

이형만 임홍길 이경조 민길성 이창수 박정수 백성균 권택성 조형국 김성권 황진수

2. 전체회의

1) 제1차 전체회의

- ☞ 일 시: 2023. 11. 14(화) 11:00
- ☞ 장 소: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가. 위원장: 임재호 목사, 서기: 소재열 목사, 회계: 하태묵 장로, 총무: 김양흡 목사

나. 권징조례분과장: 이형만 목사

분과위원: 이경조 목사, 이창수 목사, 민길성 목사, 박정수 장로, 백성균 장로

다. 정치·헌법적규칙분과장: 임홍길 목사

분과위원: 임병만 목사, 문미식 목사, 송기섭 목사, 황진수 장로

② 헌법자구수정위원회 명칭과 위임 내용을 총회임원회에 요청하여 처리키로 하고 문안 작성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다.

③ 각 분과는 제107회기 헌법개정위원회 연구 내용을 참고하기로 하다.

④ 제107회 총회에서 결의한 헌의대로 개정 범위를 정하기로 하다.

⑤ 헌법책을 위원에게 배부키로 하다.

⑥ 본 위원회 공청회 등으로 경비 3천만 원을 추경 청원하기로 하다.

⑦ 차기 회기는 2024년 2월 29일에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2) 제2차 전체회의

- ☞ 일 시: 2024. 2. 29(목) 11:00
- ☞ 장 소: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각 분과가 연구결과를 보고하다.
가. 권징조례분과가 발표하다(분과장: 이형만 목사, 서기 이경조 목사).
나. 정치·헌법적규칙분과가 발표하다(분과장: 임홍길 목사).
- ② 7월 8일 ~ 10일(2박 3일) 총회 보고를 위한 회의를 하기로 하다.
- ③ 7월 회의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④ 권역 공청회는 추경 집행 여부를 확인 후에 정하기로 하다.

3) 제3차 전체회의

- ☞ 일 시: 2024. 2. 27(화) 11:00
- ☞ 장 소: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다.
 - ② 별첨과 같이 총회임원회로 발송한 “헌법자구수정위원 교체 및 위원회 명칭 수정 청원”은 추인하기로 하다.
 - ③ 헌법(서론, 정치, 헌법적규칙, 예배모범, 권징조례) 자구수정안을 축조하여 확정하고, 이후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 ④ 차기 전체회의는 7월 22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4) 제4차 전체회의

- ☞ 일 시: 2024. 7. 22(월) 11:00
- ☞ 장 소: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총회임원회로 발송한 “헌법자구수정위원 교체 및 위원회 명칭 수정 청원”건 결과는 확인하다.
 - ② 제109회 총회보고서 제출과 제109회 총회 정기감사 참석 및 중간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결과 답변 제출의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③ 개정(자구수정)안을 축조하여 확정하고, 제109회 총회보고서 PDF 파일에 수록하기로 하다.
 - ④ 이후 후속조치와 청원 및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 일 시: 2024. 2. 29(목) 10:30
- ☞ 장 소: 총회회의실
- ☞ 결의사항
 - ① 전체회의를 점검하다.

(2) 제2차 임원회

- ☞ 일 시: 2024. 7. 1(월) 08:23
- ☞ 장 소: 비대면회의
- ☞ 결의사항
 - ① 헌법 개정 절차인 정치 제23장에 의해 위원은 ‘목사 장로 15인’으로 구성되나 현재 본 위원회는 목사 11인, 장로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문



제제가 있기에 총회임원회에 임병만 목사(구미노회) 대 권택성 장로(경안노회), 문미식 목사(목포제일노회) 대 조형국 장로(광주노회), 송기섭 목사(동대구노회) 대 김성권 장로(서대구노회)로 위원 교체 청원하기로 하다.

- ② 본 위원회의 명칭을 헌법 정치 제23장의 헌법 개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헌법자구수정위원회’에서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로 총회임원회에 위원회 명칭 수정 청원하기로 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2024. 7. 16(화) 18:00

☞ 장 소: 비대면회의

☞ 결의사항

- ① 전체회의에서 임원회에 위임한 수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논의하고 이에 진행하다.

3) 분과회의(권징조례분과)

(1) 제1차 권징조례분과회의

☞ 일 시: 2023. 12. 14(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이형만, 서기 이경조, 회계 박정수
- ② 현대어와 쉬운 용어로 수정하기로 하다.
- ③ 별지로 첨부된 권징조례 1장 3조, 2장 7조, 99조 4항, 100조를 보완하기로 하다.
- ④ 2차 회의는 2024년 2월 5일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하기로 하다.

(2) 제2차 권징조례분과회의

☞ 일 시: 2024. 2. 5(월)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권징조례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자구수정 보완하기로 하다.
- ② 각자 권징조례에서 수정할 부분을 정하여 이유서를 첨부하여 차기 회의 시 지참하기로 하다.
- ③ 2월 22일 오전 11시 3차 회의에서 전체회의 시 보고할 수정사항을 확정하기로 하다.

(3) 제3차 권징조례분과회의

☞ 일 시: 2024. 2. 22(목) 11:0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체회의 시 권징조례 5개 항에 대하여 자구수정 및 보완에 대해 보고하기로 하다.

4) 분과회의(정치·헌법적규칙분과)

(1) 제1차 정치·헌법적규칙분과회의

☞ 일 시: 2024. 1. 11(목) 11:10

☞ 장 소: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헌법 정치 및 규칙에 대하여 토의하다.
- ② 차기 회의는 2월 22일(목)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수입사항 보고

- 1) 제108회 총회가 본 위원회로 하여금 헌법개정(자구수정)안을 마련하여 제109회 총회 시 보고하라 하였기에 별첨(다음 페이지 참조)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리나이다.



[별첨] 헌법개정(자구수정)안

정 치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총론	<p>총론</p> <p>5.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이 정책은 모세(출 3:16, 18:25, 민 11:6)와…</p> <p>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의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때 본 총회의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p>	<p>총론</p> <p>5. 장로회 정치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이 정책은 모세(출 3:16, 18:25-26.1) 민 11:6)와…</p> <p>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교회 헌법, 장로회 헌법)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고, 1917년 제6회 총회, 1922년 제11회 총회 때 본 교회 헌법을 제정할 때에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로 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다.</p>
제 1 장	<p>제 1 장 원리</p> <p>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그 지체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p>	<p>제 1 장 원리</p> <p>제 3 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그 지체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p>
	<p>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悖理)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p>	<p>제 4 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傾向)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虛僞)가 동일(同一)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관계 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이치에 어긋나고 더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연결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p>
	<p>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遵奉 傳達)하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_____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p>	<p>제 7 조 치리권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것뿐이다. 대개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 무오(正確無誤)하고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自意)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기인(基因)한다.</p>
제 3 장	<p>제 3 장 교회 직원</p> <p>제 1 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사(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p>	<p>제 3 장 교회 직원</p> <p>제 1 조 교회 창설(創設) 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 10:1-8)⁸)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選拔)하사(시 2:8, 계 7:9) 한 몸(고전 10:17)이 되게 하셨다.</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답전 3:7)와 집사요 _____,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p>제 2 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답전 3:1-79)와 집사요(답전 3:8-13)¹⁰,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는 교회 대표자요¹¹)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 항존직의 시무년한은 만 70세로 한다.
	<p>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1. 전도사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p>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1. 전도사 남·녀¹²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¹³을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제 4 장	<p>제 4 장 목사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1. 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벰전 5:2~4, 답전 3:1),</p>	<p>제 4 장 목사 제 1 조 목사의 의의(意義) 1. 양의 무리를 돌보는¹⁴ 자이므로 목자라 하며(렘 3:15, 벰전 5:2~4, 답전 3:1),</p>
	<p>제 2 조 목사의 자격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29세 이상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27세 이상자로 한다(답전 3:1~7).</p>	<p>제 2 조 목사의 자격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29세 이상자로 한다. 단, 선교사는 만27세, 군목은 만24세,¹⁵ 이상자로 한다(답전 3:1~7).</p>
	<p>제 4 조 목사의 칭호 1. 위임 목사 ...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2. 시무목사 ...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_____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성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_____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5. 무임 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p>	<p>제 4 조 목사의 칭호 1. 위임 목사 ...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되며 무임 목사가 된다.¹⁶ 2. 시무목사...조직 교회에서는 위임 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4. 원로 목사 동일(同一)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 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성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투표수¹⁷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5. 무임 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11.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__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1. 선교사 다른 민족을 위하여 <u>내18</u>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제 5 장	제 5 장 치리 장로 제 5 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 공동의회의 _____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제 5 장 치리 장로 제 5 조 원로 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 공동의회의 <u>투표수 과반수19</u>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연권회원이 된다.
제 6 장	제 6 장 집사(執事) 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u>남교인</u> 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인수(接手)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	제 6 장 집사(執事) 제 1 조 집사직(職)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u>남 입교인</u> 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인수(接手)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恒存)직이다.
제 7 장	제 7 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 10. 권징(勸懲)(히 13:17, <u>살전 5:12~13</u> , 고전 5:4~5, 딤편 1:20, 5:20)	제 7 장 교회 예배 의식(儀式) 10. 권징(勸懲)(히 13:17, <u>살전 5:12~14, 20</u>) 고전 5:4~5, 딤편 1:20, 5:20)
제 8 장	제 8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 3 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u>대회와</u>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 8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 3 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 <u>대회는21</u> 매년 1회 이상,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회한다.
	제 4 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u>행 15:1, 32</u>).	제 4 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u>행 15:1-32, 22</u>)
제 9 장	제 9 장 당 회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u>지교회를</u>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u>행 14:23, 딤편 1:5</u>)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9 장 당 회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은 <u>지교회 위임23</u>)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u>행 14:23, 딤편 1:5</u>)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3 조 당회장 _____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3 조 당회장과 대리 회장24)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 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_____ 당회장 될 <u>사람을</u>	제 4 조 당회장과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 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u>임시</u> 당회장 될 <u>목사를25)</u>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_____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 5 조 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p> <p>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p> <p>5. 각 항 현금 수집하는 일을 주관 각 항 현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성한다.</p> <p>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_____, _____,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教)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별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p> <p>제 9 조 각종 명부록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p> <p>제 10 조 연합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p>	<p>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당회원 과반수로(26)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원 과반수로(27)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제 5 조 당회의 직무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 및 어린이 세례(28)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학습, 입교, 세례, 유아 및 어린이 세례(29))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p> <p>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4개월(30)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p> <p>5. 각 항 현금 수집하는 일을 주관 각 항 현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성한다.</p> <p>6. 권징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정직(停職), 면직(免職)(31)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教)(32)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별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p> <p>제 9 조 각종 명부록 8. 유아 및 어린이(33)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대로(34)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p> <p>제 10 조 연합당회 한 지역(35)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p>
제 10 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장 노 회</p> <p>제 2 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0 장 노 회</p> <p>제 2 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역(36)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p>
	<p>제 3 조 회원 자격</p>	<p>제 3 조 회원 자격</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각 지교회 시무____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p>	<p>각 지교회를 시무하는³⁷⁾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p>
	<p>제 6 조 노회의 직무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은 치리회가 아니니 ... 또 그 지방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봉급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 위원 혹은 특별 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 위원을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 위원은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방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과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 위원은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 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11. 시찰 위원은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p>	<p>제 6 조 노회의 직무 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쇄³⁸⁾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 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9. 노회는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 위원의 정원과 시찰할 구역은 노회에서 작정한다. 시찰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 또 그 지역의 목사와 강도사의 일할 처소와 생활비³⁹⁾에 대하여 경영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노회는 허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회 혹은 특별 위원회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 시찰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노회를 위하여 교회 형편을 시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회는 교회의 청함이 없을지라도 그 지역 안에 있는 당회와 연합 당회와 제직회와 부속한 각 회에 언권 방청원으로 출석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각 당회는 장로 및 전도사를 선정할 일에 대하여 의논할 때에는 시찰위원회와 협의함이 가하다. 시찰위원회는 그 구역 안 교회 형편과 위탁 받은 사건을 노회에 보고할 것이나 당회나 교회 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 청 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11. 시찰위원회는 가끔 각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p>
	<p>제 8 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시무 목사 (2) 무임 목사 (3) 원로 목사 (4) 공로 목사 (5) 전도사 (6) 목사 후보생 (7) 강도사</p>	<p>제 8 조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1) 위임목사 (2) 시무목사 (3) 부목사 (4) 원로목사 (5) 무임목사 (6) 전도목사 (7) 교단 기관 목사 (8) 군중 목사 (9) 군선교사 (10) 교육 목사 (11) 선교사 (12) 은퇴 목사 (13) 강도사 (14) 목사 후보생 (15) 전도사⁴⁰⁾</p>
	<p>제 11 장 대회 제 2 조 개회 성수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p>	<p>제 11 장 대회 제 2 조 개회 성수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이상이 회집하면 개회 성수가 된다.</p>
제 11	<p>제 4 조 대회 권한과 직무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p>	<p>제 4 조 대회 권한과 직무 5. 노회를 설립, 합병, 분립, 폐쇄⁴¹⁾하며 노회</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장	<p>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p> <p>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고한 것이나...</p> <p>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고하는 일이 없을 지라도...</p>	<p>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p> <p>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 상소한 것이나...</p> <p>10. 대회가 하회(下會)에 대하여 만일 불법한 사건이 있는 줄로 아는 때는 상소⁴²⁾하는 일이 없을 지라도...</p>
제 12 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 12 장 총회</p> <p>제 3 조 총회의 _____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2 장 총회</p> <p>제 3 조 총회의 개회 성수 총회가 예정한 일시와 장소⁴³⁾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p>
	<p>제 4 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p>	<p>제 4 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와 소원과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p>
	<p>제 5 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_____, _____,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p>	<p>제 5 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소⁴⁴⁾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p>
	<p>제 6 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p>	<p>제 6 조 총회의 회집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p>
	<p>제 7 조 개회 폐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되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p>	<p>제 7 조 개회 파회 의식(儀式)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파회하되 파회⁴⁵⁾하기로 결정한 후에는...</p>
제 13 장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p> <p>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p> <p>제 1 조 선거 방법 치리 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 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수⁴⁶⁾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p>
<p>제 3 조 임직 순서 1. 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p>	<p>제 3 조 임직 순서 1. 교회가 당회의 정한 일시⁴⁷⁾와 장소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2.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p> <p>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p> <p>이상 4와 5항은 취임 서약이다.</p> <p>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썬을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_____ 복종 _____ 하기로 맹세하느뇨?</p>	<p>백48)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받아 신중하느뇨?</p> <p>5.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느뇨?</p> <p>이상 4와 5항은 취임 서약이다.</p> <p>피선(被選)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썬을 본 교회의 장로(혹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치리에49) 복종 (혹 집사는 시무에 협력)50) 하기로 맹세하느뇨?</p>
	<p>제 4 조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_____ 과반수를 요한다.</p>	<p>제 4 조 임기 치리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투표수51) 과반수를 요한다.</p>
제 14 장	<p>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 2 조 관 할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회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p>	<p>제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 2 조 관 할 3. 누구든지 총회가 인정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의 지도 아래서 수양 받지 아니한 자는 신학 졸업 후 노회 관할 아래 후보생으로 1년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52)에서 신학과 교회 헌법을 수업한 후에 강도사 고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p>
	<p>제 4 조 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____,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 ...</p>	<p>제 4 조 고시 종목 고시는 구두(口頭)와 필기 2종이 있으니 그 과목은 아래와 같다. 조직신학, 교회 헌법(정치),53) 교회사, 논문, 주해(註解), 강도. ...</p>
	<p>제 5 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p> <p>2.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자기의 사용할 것으로 승낙하느뇨?</p>	<p>제 5 조 인허 서약 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p> <p>2.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54)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55)</p>
제 15 장	<p>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3 조 청빙 준비 _____ 투표하여 _____ 3분의 2 _____ 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p>	<p>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3 조 청빙 준비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투표수 3분의 2 이상 의56) 가(可)라 할지라도 부(否)라 하는 소수가 심히 반대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교우에게 연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가하다.</p>
	<p>제 4 조 청빙 서식 OO곳 OO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p>	<p>제 4 조 청빙 서식 OO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담임 목사(혹 시무 목사)로 청빙하오며,...</p>	<p>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 교회 위임 목사(혹 시무 목사)로 청빙하오며,...</p>
	<p>제 6 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드릴 것이요 ...</p>	<p>제 6 조 청빙서 제정(提呈) 청빙서는 청빙 받은 자를 관할하는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p>
	<p>제 8 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_____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p>	<p>제 8 조 다른 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 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p>
	<p>제 10 조 임직 예식 1. 서약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친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p>	<p>제 10 조 임직 예식 1. 서약 ②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은 친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p>
	<p>제 11 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OO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_____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p>	<p>제 11 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3.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OOO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 공포하고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p>
	<p>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_____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강도사 인허와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p>
<p>제 16 장</p>	<p>제16장 목사 전임 제 2 조 본 노회 안에 전임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_____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_____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교회에 즉시</p>	<p>제16장 목사 전임 제 2 조 본 노회 안에 전임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본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결의로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교회</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p> <p>제 3 조 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p>	<p>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p> <p>제 3 조 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은 정치 제15장 제8조에 따라 그 노회는 청빙 받은 목사에게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송부한다.66)</p>
제 17 장	<p>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p> <p>제 2 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_____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p>	<p>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p> <p>제 2 조 권고 사면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u>공동의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67)</u>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p>
	<p>제 5 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휴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p>	<p>제 5 조 목사의 휴양 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휴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自動的)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되며 <u>무임 목사가 된다.68)</u></p>
제 18 장	<p>제18장 선교사</p> <p>제 2 조 외국 선교사 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u>율례</u>를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 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②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u>신도개요</u> 및 대·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u>믿느뇨?</u> ④ 귀하는 본 <u>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u>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느뇨? ⑥ 귀하는 신앙 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u>응분적</u>이어야 할 줄 알며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지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며 잘 순응하겠느뇨?</p>	<p>제18장 선교사</p> <p>제 2 조 외국 선교사 4. 본 총회 산하 노회에서 파견 증서로 시무하는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u>헌법</u>을69) 준행할 의무가 있으니 ... 6. 외국 선교사에 대한 서약문 ② 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u>신앙고백</u> 및 대·소요리문답을 정당한 것으로 <u>신중 하느뇨?</u> ④ 귀하는 본 <u>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u>에 배치되는 교훈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느뇨? ⑥ 귀하는 신앙 보수는 의논이나 체계적 뿐만 아니라 그 생활도 <u>응분적(應分的)</u>이어야 할 줄 알며 우리 총회의 음주 흡연 및 속된 생활 등을 금지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며 잘 순응하겠느뇨?</p>
제 19 장	<p>제19장 회장과 서기</p> <p>제 2 조 회장의 직권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u>처리</u>하고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언권을 얻</p>	<p>제19장 회장과 서기</p> <p>제 2 조 회장의 직권70) 1. 회장은 그 회가 허락하여 준 권한 안에서 회원으로 회칙을 지키게 하고 회석의 질서를 정돈하며 개회, 폐회를 주관하고 순서대로 회무를 지도하되 잘 의논한 후에 신속한 방법으로 <u>처리</u>한다. 2. 각 회원이 다른 회원의 언권을 침해하지</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하며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 회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p>	<p>못하게 하며 회장의 승낙으로 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게 하되 의안(議案) 범위밖에 탈선하지 않게 하고 회원 간에 모욕 혹은 풍자적 무례한 말을 금하며 회무 진행 중에 퇴장을 금한다.</p> <p>3. 가부를 물을 의제(議題)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p> <p>4. 회장은 매사건에 결정을 공포할 것이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p>
	<p>제 3 조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_____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 하되 그 임기는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p>	<p>제 3 조 서기 각 치리회는 그 회록과 일체 문부를 지정된 장소에(71) 보관하기 위하여 서기를 선택하되 그 임기는그 회의 규칙대로 한다.</p>
	<p>제 4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_____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_____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p>	<p>제 4 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72)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회장과(73)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에서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p>
<p>제 20 장</p>	<p>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 1 조 속회(屬會)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_____ 조직 할 수 있다.</p>	<p>제20장 교회 소속 각 회의 권리 및 책임 제 1 조 속회(屬會) 조직 지교회나 혹 여러 지교회가 전도 사업과 자선 사업이나 도리를 가르치는 것과 은혜 중에서 자라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를 당회 결의로(74) 조직할 수 있다.</p>
<p>제 21 장</p>	<p>제21장 의회(議會)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원 _____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 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 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_____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 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p>	<p>제21장 의회(議會) 제 1 조 공동 의회 1. 회원 당회에서 임회된(75)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 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 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76) 소집한다. 3. 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 노 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며, 파송이 없는 경</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p> <p>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p> <p>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_____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우 당회원 과반수가77)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作成)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p> <p>4. 회집 당회는 개회할 일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을 선기(先期)하여78)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성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p> <p>5. 회의(會議) 연말 정기 공동 의회에서는 ...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투표수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제 2 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_____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p>	<p>제 2 조 제직회 1. 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당회가79)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회원 권리를 줄 수 있다.</p>
	<p>제 3 조 연합 제직회 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제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議定)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p>	<p>제 3 조 연합 제직회 2. 직무 본 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역 내 합동 제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주일 학교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일을 의정(議定)할 수 있고 그 지방 내 교회 및 전도 상황 보고를 접수하며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p>
제 23 장	<p>제23장 헌법 개정 제 1 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p>	<p>제23장 헌법 개정 제 1 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80)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개정81)할 것이요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p>
	<p>제 2 조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고자 할</p>	<p>제 2 조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_____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 _____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 _____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p>	<p>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총회 투표수 3분의 2 이상 결의로(82)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 이상과 모든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회가 채용하여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p>
	<p>제 3 조 총회는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p>	<p>제 3 조 총회는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83)을 개정하는 의안(議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특별히 위원 15인 이상(목사와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하게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p>
	<p>제 4 조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현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 1, 제2조를 준용(準用)한다.</p>	<p>제 4 조 특례조항(84)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인 헌법을 개정하자는 현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제2조를 준용(準用)한다.</p>

헌법적 규칙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제 1 조	<p>제 1 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p>	<p>제 1 조 미조직 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위원회(85)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p>
제 4 조	<p>제 4 조 주일 예배회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하지 말 것.</p>	<p>제 4 조 주일 예배회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훼손(훼손)(86)하게 하지 말 것.</p>
제 6 조	<p>제 6 조 성례(聖禮)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p>	<p>제 6 조 성례(聖禮) 4.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고 성례 거행하기 1주일 전기(先期)하여(87) 교회에 광고하는 준비 기도회로 교인의 마음을 준비하게 한다.</p>
제 8 조	<p>제 8 조 무임(無任) 집사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안수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 행하고</p>	<p>제 8 조 무임(無任) 집사 시무 집사가 다른 교회로 이거하여 무임 집사인 경우에 그 교회가 투표로나 당회의 결의로나 서리 집사의 임무(任務)를 맡길 수 있고 시무(88) 집사로 투표를 받으면 위임 예식만</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행하고 안수는 다시 하지 않는다.
제 11 조	제 11 조 혼상례(婚喪禮)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제 11 조 혼상례(婚喪禮) 3. 상복을 입은 기간은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u>부부상89)</u> 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부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_____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부칙 본 헌법적 규칙을 개정 증감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u>투표수 3분의 2 이상의90)</u> 결의로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의 가결로 한다.

권징조례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제1장 총론	제1장 총론
제 1 장	제 3 조 범 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 3 조 범 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성경과 교회 헌법과 각 규칙에1)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 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 4 장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제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 규제
	제 20 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 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제 20 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고와 피고기2)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제 24 조	제 24 조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 피고 가 진술한다.	4. 증인의 말을 청취한 후에 원고와 피고기3) 진술한다.
제 6 장	제 26 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 26 조 최상급회를 제외한4) 다른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제 32 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_____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 32 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5) 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를 열 수 있다.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제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제
	제 41 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_____ 면직할 수 있다. 단,	제 41 조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 견책, 정직, 면직(정직),6) (면직할 때에 수찬 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 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치리회기7)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별할

No	현행	자구 수정 개정안
	해벌할 때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	때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
제 7 장	<p>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p> <p>제 54 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게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할 출교도 할 수 있다.</p>	<p>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p> <p>제 54 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u>그 직</u>(8)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게 대하여 착수한 송사 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할 출교도 할 수 있다.</p>
제 8 장	<p>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p> <p>제 56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u>원피고</u>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p>	<p>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p> <p>제 56 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u>원고와 피고는</u>(9)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p>
	<p>제 61 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u>특허</u>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u>제출</u>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u>암시</u>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p>	<p>제 61 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u>특별허락</u>(10)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u>신청</u>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u>유도</u>(11)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p>
	<p>제 62 조</p> <p>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u>날짜</u>와 <u>처소</u>를 통지하고 ...</p>	<p>제 62 조</p> <p>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u>일시</u>와 <u>장소</u>(12)를 통지하고 ...</p>
	<p>제 66 조</p> <p>2. 위의 조사국은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u>날짜</u>와 <u>처소</u>를 통지하고...</p> <p>3. <u>어떻게</u>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회가 진행한다.</p>	<p>제 66 조</p> <p>2. 위의 조사국은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u>일시</u>와 <u>장소</u>를 통지하고...</p> <p>3. <u>이렇게</u>(13) 수합한 증거가 본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부족(足不足)은 본 재판회가 진행한다.</p>
제 9 장	<p>제9장 상소하는 규례</p> <p>제 72 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u>날짜</u>를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제9장 상소하는 규례</p> <p>제 72 조 본 교회와 부속회에서 처리한 사건은 ... 각 하회가 그 회록을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편의대로 올려 보내라든지 <u>일시</u>(14) 정하여 올려 보내라든지 독촉 명령을 발할 수 있다.</p>
	<p>제 74 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p>	<p>제 74 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가부를</p>



No	현행	자구 수정 개정안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결정할 때에 그 하회 총대에게는 결의권이 정지된다.
	제 75 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 이나 ... 단, 재판 사건은 상고 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 75 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보통 있는 흔한 사례15) 이나 ... 단, 재판 사건은 상소16) 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제 76 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 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은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은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 76 조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장소17) 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은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인에게18)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은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제 85 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_____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은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이유서 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85 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 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은 시무하기 불가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소원 통지서와 소원장과 소원 이유 설명서 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
	제 86 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_____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 한다.	제 86 조 재판 사건 외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이상 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정지 한다.
	제 91 조 소원이나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1 조 소원자나19) 피소원자 된 하회 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 94 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피고 를 불문하고	제 94 조 상소(上訴)는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 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원고와 피고 를20) 불문하고
	제 96 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_____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은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	제 96 조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은 시무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계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p> <p>제 97 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p>	<p>계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교부한다.</p> <p>제 97 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 상소인이 전기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사고로21)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p>
제 11 장	<p>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p> <p>제 111 조 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p> <p>제 112 조 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p>	<p>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p> <p>제 111 조 지교회가 폐쇄22)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쇄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p> <p>제 112 조 노회가 폐쇄23)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p>
제 12 장	<p>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p> <p>제 113 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납부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p>	<p>제12장 이주(移住) 기간에 관한 규례</p> <p>제 113 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이명서를 1년 내로 옮기는 교회에 제출24)한다. 1. 부모가 옮길 때에 세례 받은 유아 및 어린 이25)(수찬 연령 미만자)가 있으면 그 이명서에 함께 기록한다.</p>
제 13 장	<p>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p> <p>제 117 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p> <p>제 119 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___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p> <p>제 120 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p>	<p>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p> <p>제 117 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 재판국의 국원수는 7인(목사 4인, 장로 3인)26)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 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 단, 재판국원은 위임 목사여야 한다.27)</p> <p>제 119 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28)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p> <p>제 120 조 재판국원의 회집 일시와 장소는 본 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p>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제 13 장	제 122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 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 와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22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한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국장 ²⁹⁾ 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등본 날인하여 원고 와 피고가 ³⁰⁾ 본 노회 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25 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 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 125 조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 ³¹⁾ 과 대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대회에 보고한다.
	제 126 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_____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 이라야 한다.	제 126 조 대회 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이상 ³²⁾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 이라야 한다.
	제 127 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날짜 와 처소 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 127 조 대회 재판국의 집회 일시 와 장소 ³³⁾ 는 대회가 정하거나 대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정한다.
	제 129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 와 대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 129 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 사건의 진행과 심리 판결한 것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고 와 피고 ³⁴⁾ 대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제 131 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_____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31 조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대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대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대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제 134 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_____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제 134 조 총회는 상설 재판국을 두고 15인 (목사 8인, 장로 7인) ³⁵⁾ 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제 135 조 재판국은 회장 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의 헌법 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_____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5 조 재판국은 국장 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 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 헌법 ³⁶⁾ 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판결을 ³⁷⁾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6 조 총회 재판국원의 _____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 됄을 요한다.	제 136 조 총회 재판국원의 개회 ³⁸⁾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 중 6인이 목사 됄을 요한다.
	제 138 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제 138 조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권징재판으로 제한한다.³⁹⁾
	제 139 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39 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고와 피고⁴⁰⁾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제 141 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_____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제 141 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도록⁴¹⁾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제 14 장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제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 1부 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의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제14장 치리회 간의 재판 규제 제 146 조 소원을 접수한 상회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 이유가 상당하면 피고 회의 결정 전부 혹 일부⁴²⁾ 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 피고회에 대하여 처리할 방법을 지시할 것이요, 원고나 피고 회의는 또 그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

예배모범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제11장 성례 1. 세례 (3)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공교회 예배 시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 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와 같은 경우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베풀 수 있다(유아세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1장 성례 1. 세례 (3)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공교회 예배 시 베풀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중환자 나 군대 또는 교도소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자와 같은 경우는 목사의 판단이나 당회의 결의로 베풀 수 있다(유아 및 어린이 세례 ⁴³⁾ 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 11 장	2.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4) ...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친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과 대·소요리문답 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2.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4) ... 또한 다음과 같이 그 부모를 권면하여 삼가 부모의 직분을 다하라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가르치며 친구약 성경에 가르친 거룩한 종교의 원리대로 가르칠 것이니 이 원리의 요령은 우리 교회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에 간단히 가르쳤은즉 이 모든 책은 부모의 직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 눈앞에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진력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자라게 할 것이다.
	<p>3. 입교 (1) 교회 교우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 의 권고와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 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4) 유아세례 받은 자가 당회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5) 입교 문답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때부터 교인이 되고… ②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p> <p>5. 성찬 예식 (4)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전기(前期) 하여 광고하되, …</p>	<p>3. 입교 (1) 교회 교우에게서 출생한 자녀로 유아 및 어린이 세례를 받은 아이는 교회 의 권고와 치리 아래 있고 글을 가르치며 요리문답과 사도신경 과 주기도문을 독습하게 하며… (4) 유아 및 어린이 세례 받은 자가 당회 허락을 받아 성찬에 처음 참여할 때에… (5) 입교 문답은 아래와 같이 한다. ① … 「유아 및 어린이 세례를 받음으로 어린 때부터 교인이 되고… ② 유아 혹은 어린이 때 세례를 받은 자가 그 자리에 참여하였거든…</p> <p>5. 성찬 예식 (4)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1주일 선기(先期) 하여 광고하되, …</p>

서문 및 차례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신도개요’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1. 명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으로 통일함. ※ 참조: 제48회 총회(1963. 9. 19-24), “ 대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를 우리의 신앙표준서로 수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은 표준서로 수납함이 좋은 줄 아오며.”
	헌법 책 뒤쪽 부록에 있는 <신도개요>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헌법 책 “I. 신조” 다음으로 배열
	‘신도개요’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수정한 이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옛날엔 “신도개요서”(信徒揭要書)라고 했다(信:믿을 신, 徒:무리 도, 揭:높이들 게, 要:요긴할 요, 書:글 서)이다. 대강, 대부분, 요약의 뜻인 ‘개요(概要)을 사용하지 않고 ‘게(揭)를 썼다. 풀어쓰면 신도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들을 게재한 책 이라는 의미이다. 정리해 보면 성경의 내용을 순서적으로 정리하거나 단순히 요약한 ‘개요’가 아니라 ‘ 개요 ’, 즉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며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란 뜻이다. 즉, 성경의 핵심을 높이 드러내는 본질이란 의미의 뜻이다.

No	현 행	자구 수정 개정안
		<p>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의미가 있으므로 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표준문서로 받아들였다. 구태여 신도계요라는 의미로 해석된 내용을 제목으로 붙일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신도계요가 이러한 의미라면, 12신조나 대소요리문답도 신도계요에 해당된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통일하여 본 장로회 헌법에 교리부분인 12신조 다음으로 배열하는 것이 수정안의 내용이다.</p>
	<p>헌법 서문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0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p>	<p>헌법 서문 본 대한예수장로회 헌법¹⁾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0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p>
	<p>헌법 서문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성경신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성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p> <hr/> <hr/> <hr/> <hr/> <hr/> <hr/> <hr/> <hr/> <p>1932년 9월 9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회집된 제21회 15인을 택하여 한국 사용법대로 개역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1933년 9월 8일 선천교회에서 회집된 제22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p>	<p>헌법 서문 1912년 9월 1일 평양 여자성경신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성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 이후 1922년 9월 10일 제11회 총회에서 제정공포(정치)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 1922년 10월 15일에 출간되었다. 1927년 9월 1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6회 총회에서 16명의 헌법 수정위원을 임명하였으며, 1928년 9월 7일 제17회 총회에서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수정을 결의하고 노회수의가 통과 되어 1929년 9월 6일 제18회 총회에서 공포하여 제1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²⁾ 1932년 9월 9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회집된 제21회 15인을 택하여 한국 사용법대로 개역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1933년 9월 8일 선천교회에서 회집된 제22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³⁾</p>

※ 아래 각주 설명은 본 헌법개정(자구수정)위원회가 제109회 총회 본회에서 개정안을 보고할 때 참고(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 내용이지만, 개정(자구수정)의 적합한 이유 및 배경이기에 제109회 총회보고서 PDF파일에 수록하여 전체 총회총대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정치]

- 1) 본문을 출애굽기 18:25에서 18:25-26절로 26절을 추가했다.
- 2) 본 장로회 헌법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정치편에서는 ‘교회 헌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장로회’로 약칭하여 ‘장로회 헌법’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최고 치리회(정치 제12장 제1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므로 ‘총회 헌법’이라 하지 않는다. 본 수정안은 통일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혹은 ‘교회 헌법’으로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3) 설치(設置)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나 설비, 건물 따위를 마련하여 갖추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치가 아닌 세운다는 의미로 자구를 수정했다.
- 4) ‘패리(悻理)하고’라는 한자어는 우리의 실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따라서 이 단어를 ‘이치에 어긋나고’라고 자구 수정을 하였다. 패리(悻理)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도리나 이치에 어긋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이다. 이 의미를 살려 “이치에 어긋나고”라고 자구를 수정했다.
- 5) 진리와 본분이 결탁되었다는 의미의 한문 표기를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로 자구를 수정했다.
- 6) 준봉 전달(遵奉 傳達)에 대한 한문 표기를 “순종하고 따르는”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7) 12신조 중 1조를 인용한 부분인데 “정확 무오(正確無誤)하고”가 누락되어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8) 마 10:1-8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 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 9) 딤후전 3:1-7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 10) 딤후전 3:8-13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 11) 향존직에서 치리장로는 “교인의 대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도 장로인 목사는 “교회 대표자”라는 자구 삽입은 목사와 장로의 교회와 교인에 대한 대표자에 대한 개념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치 제9장 제3조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와 같은 맥락이다.
- 12) ‘남녀’와 ‘남여’에 대한 자구는 ‘남녀’로 통일했다.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음 법칙에 따라 ‘여’로 적는다(예, 여자)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녀’로 적는다(예, 남녀).
- 13) 총회 신학교가 없어졌다. 총회 신학교, 즉 총회 직영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기 때문

에 이 명칭으로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14) 교인을 감시하기보다 돌보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15) 현재 총회 결의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특별 원칙에 해당된다.
- 16) “경기북노회에서 요청한 목사 휴양에 관한 헌법 유권해석의 건은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는 것은 시무가 해제되는 것(사임 처리)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제108회 총회 보고서 66쪽)
- 17) 과반수 요건을 명확하게 ‘투표수’로 하는 규정이다. 출석회원이라 할 경우, 개회 시 출석회원과 결의 당시 출석회원 사이에 개념의 오해가 있으므로 ‘투표수’로 자구를 수정했다.
- 18) 정치 제18장 선교사 규정 중 제1조에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19) 결의를 명확히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20) 살전 5:12-14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 21) 정치 제11장 대회, 제5조와 통일성 유지키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22) 행 1, 32절만이 아닌 1-32절을 포함한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23) 현재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를 담임목사로 호칭하고 있으므로 조직 교회 위임 목사로 자구를 수정했다.
- 24) 본문에 대리 회장이라 하였으므로 제목을 대리 회장으로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25) ‘파송한 사람’을 헌법에 따라 ‘목사’로 자구를 수정했다.
- 26) 노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해 주지 아니하면 당회 조직요건이 불성립(반드시 당회장이 있어야 함)되므로 이때는 ‘당회원 과반수’로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이 경우는 당회장 궐위시 노회가 파송해 주지 아니할 때에 관련된 규정이다.
- 27) 노회가 당회장 될 목사를 파송해 주지 아니하면 당회 조직요건이 불성립(반드시 당회당이 있어야 함)되므로 이때는 당회원 과반수로 일반 사무를 처리하는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이 경우는 노회가 파송해 주지할 때에 관련된 규정이다.
- 28) 헌법 개정 시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로 구분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 모든 헌법 규정을 통일시켰다.
- 29) 헌법 개정 시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로 구분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 모든 헌법 규정을 통일시켰다.
- 30) 노회에서 허락받은 회기에서 차기 노회 정기회에서 승인받기 위해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반년 이상을 4개월 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1) 정직과 면직이 누락되어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32) 그동안 본 장로회 헌법에서 지교회 교인이 스스로 해당 교회에서 탈퇴하거나, 당회가 강제적으로 교인 지위를 상실케 하여 해당교회 총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개념을 ‘제명’으로 처분한다.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단절케 하는 ‘출교’가 있다. 이 출교는 제명과 다른 개념으로 딤후 2:17에서 말한 출교가 있다. 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악한 창질”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암”(cancer)을 가리킨다(NKJV). 따라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출교(excommunication)시키는 데 이 출교는 앞서 제명과 다른 개념으로 규범화하였다. 따라서 “제명, 출교”라고 하여 “제명 또한 출교” 개념이다. 그러나 구태



여 “제명출교”라 하지 않는다. 출교 처분만 하면 자동으로 제명의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이다. 제명은 다른 지교회에 가입할 수 있어도 출교는 다른 지교회에 가입할 수 없다. 출교자가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처별받은 치리회에서 절차에 따라 출교에 대한 취소나 변경 처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회 재판회나 노회 재판국은 판결할 때, ‘제명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출교처분’을 구분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 33) 헌법 개정 시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로 구분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 모든 헌법 규정을 통일시켜 자구를 수정했다.
- 34) 가족관계증명서(家族關係證明書)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이다.
- 35) 도시가 아닌 지역이 있으므로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6) 지방을 지역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7) 시무하는 형편에 따른 칭호로 ‘시무 목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칭호가 아닌 시무하는 목사로 표기되어야 하므로 자구를 수정했다.
- 38)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애는 개념의 폐지를 문을 닫는 폐쇄로 자구를 수정했다.
- 39) 시찰위원을 시찰위원회로, 지방을 지역으로, 봉급을 생활비로 자구를 수정했다.
- 40) 노회가 보관하는 명부는 정치 제4장 제4조에 준하였다. 여기에 전도사를 포함시킨 것은 전도사는 노회 고시로 인가하기 때문이다(정치 제3장 제3조 1항)
- 41) 분설을 분립과 폐쇄로 자구를 수정했다.
- 42) 헌법의 통일성은 상소이므로 상소로 통일하였다.
- 43) 본 헌법에서 낱짜를 일시와 장소로 모두 통일하였다.
- 44) 헌법의 통일성은 상소이므로 상소로 통일하였다.
- 45) 총회는 파회라는 법리로 폐회가 아닌 파회로 자구를 수정했다.
- 46)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을 투표수로 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47) 본 헌법에서 낱짜를 일시로 모두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48) 서론에서 밝힌 대로 신도계요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49) 예배모범 제11장 1. 세례서약 문답에서 ‘치리에 복종’ 서약이 있다. 이때 치리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에 있다.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정치 제8장 제1조). 교인이 위임 목사에게 복종은 ‘치리에 복종’이다. 치리 장로 역시 ‘치리에 복종’ 서약을 교인들에게 받아야 치리회(당회) 구성원으로 치리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목사에게 ‘치리에 복종’이면 장로에게도 ‘치리에 복종’이어야 한다.
- 50) 치리 장로가 시무 집사에게 복종 서약을 할 수는 없다. 이유는 집사에게는 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사 임직식에서 집사에게는 ‘시무에 협력’ 서약으로 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51) 과반수의 전제 요건이 없을 때 언제나 분쟁의 원인이 된다. 투표수로 자구를 수정했다.
- 52) 총회 신학교가 없어졌다. 총회 신학교, 즉 총회 직영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53) 총회는 그동안 강도사 고시는 헌법(신조, 대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치로 제한하여 왔다. 나머지는 목사고시 때에 고시 대상으로 한다(정치 제10장 제6조; 목사 고시를 행하되 그 과목은 신조,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목회학, 면접 등이다). 따라서 강도사 고시에서 교회 헌법은 정치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헌법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도 고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총회는 고시 문제로 혼란이 올

수도 있다.

- 54) 서론에서 밝힌 대로 신도계요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55) 목사 임직 예식(정치 제15장 제10조 1항)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요 및 대소 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라고 했다. 또한 장로 임직(정치 제13장 제3조 2항)에서도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계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느뇨?”라고 했다. 장로회 헌법 초판(1922년판)은 목사 임직, 장로 임직, 강도사 인허식 때 모두 “승낙하느뇨”라고 했다. 그러나 후에 목사와 장로 임직에서는 ‘신중’으로 변경했지만, 강도사 인허식에는 ‘승낙’을 그대로 두었다. 본 장로회 표준문서를 본인이 승낙하는 개념 보다 넓은 ‘믿고 복종해야 한다’는 ‘신중’으로 하였다. 따라서 강도사 인허 역시 믿고 복종해야 하는 신중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56) 3분의 2와 3분의 2 이상은 다른 개념이다. 자구를 이상으로 수정했다.
- 57) 청빙할 때 조직교회 위임 목사, 시무 목사,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 등으로 구분된다. 위임 목사로 만 청빙하는 것이 아니기에 시무 목사를 포함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58) 드린다는 개념이 아닌 제출한다는 행정용어로 자구를 수정했다.
- 59)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노회 서기는 해노회에 보고하여 안건으로 상정한다. < >한 이후 해당 사역자에 대한 이명서를 접수받을 때까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사이인 < >에 ‘절차에 따라’를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60) 서론에서 밝힌 대로 신도계요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통일했다.
- 61) 날짜를 일시로 일괄 자구를 수정했다.
- 62) 위임 목사 위임식은 노회의 권한이다. 노회가 주관한 위임식에서 위임 목사됨을 공포하는 행위는 대표자인 노회장의 권한이다. 그런데 위임식 행사 주관을 위임국장에게 위임했을 뿐 위임 공포를 위임국장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며 위임하지도 못한다. 위임국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많다. 노회 대표자의 위임 공포행위는 타인에게 위임이 안 된다. 위임국장의 위임 공포는 위임국장의 월권이다. 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회장이 공포한다는 자구 수정으로 규정을 확실히 했다.
- 63) 장로회 신학교(총회 신학교)가 없어졌다. 장로회 신학교(총회 신학교), 즉 총회 직영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통일했다.
- 64) 강도사 인허 없이 목사 서약으로만 본 장로회 소속 목사가 될 수 없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65) 노회 결의 없이 서기의 직권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노회 결의’를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66) 정치 제15장 제8조는 다른 노회 사역자를 청빙하는 절차이고 본 조항(정치 제16장 제3조)은 다른 노회로 전임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두 조항은 연동되어야 혼란이 없다.
- 67) 위임해약 관련하여 제102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노경욱 씨가 현의한 공동의회 결의 없는 위임목사 위임해약과 관련한 유권해석 청원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 본 조항은 공동의회를 해야 한다거나 당회원 서명으로, 일부 교인들 서명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분쟁이 있었다. 이를 명확히 하여 “헌법대로 하다”를 객관적 규정이 되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자구로 수정했다.
- 68) “경기북노회에서 요청한 목사 휴양에 관한 헌법 유권해석의 건은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는 것은 시무가 해제되는 것(사임 처리)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



다.”(제108회 보고서 66쪽)

- 69) 헌법이라 해야 객관적 규정이 된다. 율례는 헌법에 포함된다.
- 70) 회장의 직권 규정은 한 문장으로 길다. 이를 각 항으로 구분하였다.
- 71) 치리회의 공문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치리회가 보관하기로 한 장소를 결정하면 된다. 그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72) 치리회의 공문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치리회가 보관하기로 한 장소를 결정하면 된다. 그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73) 등본에 서기만이 아닌 회장을 포함시켜 자구를 수정했다.
- 74) 교회 안에 각 속회(기관)의 조직은 당회 권한이므로 당회 결의로 조직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 75) 무조건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은 그동안 공동의회 의결권자 확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 분쟁이 심화하였다. 세례를 받은 자로 하되 반드시 당회 입회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76) 공동의회는 당회(치리회)가 소집한 것이 아니라 대표자인 당회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당회장은 당회 결의 없이는 독단적으로 소집할 수 없다. 소집권은 당회에 있지 않고 당회장에게 있다. 이 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는 개념이며, 이를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77) 본 규정은 정치 제9장 제3, 4조와 연동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
- 78) 본 규정은 주일에 공고하여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집요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79) 현재 규정은 회장(당회장)이 선정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회가 선정하도록 자구를 수정했다.
- 80) 각 노회로 수의하는 총회 의결정족수는 헌법의 불비였다. 관례적으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 왔다. 이를 성문 규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를 수정했다.
- 81) 본 조항의 제목이 개정이므로 변경을 개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82) 각 노회로 수의하는 총회 의결정족수는 헌법의 불비였다. 관례적으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해 왔다. 이를 성문 규정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83) 현 규정에서 15인 연구 위원은 교리적인 부분에만 해당되고 정치 등의 부분은 15인 위원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들이 있어 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총회 헌법 개정 위원 15인을 구성하여 헌법 개정은 불법이라는 주장과 같다. 지금까지 총회는 헌법의 정치 등 역시 연구 위원 15인을 선정하여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본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하였다.
- 84) 본 조항은 특례조항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왔다. 특례조항으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헌법 개정 위한 절차라고 한다면 지난 과거 헌법 개정은 다 위법이 돼 버린다. 따라서 특례조항으로 자구를 삽입하여 명확히 했다.
- 85) 시찰위원이 아닌 시찰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했다.
- 86) '감손'을 '훼손'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87) 정치 제21장 공동의회 소집 절차와 동일하게 자구를 수정했다.
- 88) 시무 집사를 안수집사라 하지 않는다. 헌법 정치 제6장에 규정한 것처럼 시무 집사로 자구를 수정하였다.
- 89)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수정했다.
- 90)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

- 1) 범죄의 정의를 성경을 비롯한 헌법 등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자구로 수정했다.
- 2)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3)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4) 한문 표기를 한글로 전환한 내용으로 이를 의미에 맞게 자구를 수정했다.
- 5) 이상이 누락 되어 자구를 수정했다.
- 6) 문장에서 쉼표(.) 로 자구를 수정했다.
- 7) 치리회 결의 없이 자동 면직은 불가하므로 이를 자구 수정으로 의미를 명확히 했다.
- 8) 띄어쓰기 수정
- 9)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10) 재판회의 특허를 얻은 것이라고 했을 때 ‘특허’는 ‘특별허락’의 의미로 자구를 수정했다.
- 11)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12) 이번 자구 수정 위원회에서는 현재 규정 가운데 ‘날짜’를 ‘일시’로, ‘처소’를 ‘장소’로 일괄 자구를 수정했다.
- 13) ‘어떻게’ 아닌 ‘이렇게’ 이므로 자구를 수정했다.
- 14) 이번 자구 수정 위원회에서는 현재 규정 가운데 ‘날짜’를 ‘일시’로, ‘처소’를 ‘장소’로 일괄 자구를 수정했다.
- 15) 보통 ‘항례’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본 조항에서 항례의 의미인 ‘보통 있는 흔한 사례’로 자구를 수정했다.
- 16) 본 권징조례에서 상고를 상소로 통일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17) 이번 자구 수정 위원회에서는 현재 규정 가운데 ‘날짜’를 ‘일시’로, ‘처소’를 ‘장소’로 일괄 자구를 수정했다.
- 18) 민중은 일반 사람을 의미하므로 ‘일반 민중’을 ‘일반인’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19) ‘피소원자’라고 했으니 그 상대를 ‘소원자’로 자구를 수정했다.
- 20)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21) ‘고장’을 ‘사고’로 자구를 수정하여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22)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애는 개념의 폐지를 문을 닫는 폐쇄로 자구를 수정했다.
- 23) 실시하여 오던 제도나 법규 따위를 그만두거나 없애는 개념의 폐지를 문을 닫는 폐쇄로 자구를 수정했다.
- 24) 납부를 제출로 자구를 수정했다. 이 경우 납부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 25) 헌법 개정 시 유아세례와 어린이 세례로 구분하였으므로 이에 준하여 모든 헌법 규정을 통일시켰다.
- 26) 노회 재판국 국원의 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을 7인으로 하되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명확히 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27) 현재 미조직교회 시무 목사가 노회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혼란이 임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한 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28) ‘3분의 2’라고 할 경우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경우, 상호 개념이 다르다. 본 조항에서는 3분의 2 이상이므로 ‘이상’을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29) 회장을 국장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0)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31) 본 장로회 헌법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그러나 약칭으로 ‘교회 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교회의 헌법’을 ‘교회 헌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2) ‘3분의 2’라고 할 경우와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경우, 상호 개념이 다르다. 본 조항에서는 3분의 2 이상이므로 이상을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33) 이번 개정(자구수정)위원회에서는 현재 규정 가운데 ‘날짜’를 ‘일시’로, ‘처소’를 ‘장소’로 일괄 자구를 수정했다.
- 34)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35) 동일한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6) 본 장로회 헌법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그러나 약칭으로 ‘교회 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교회의 헌법’을 ‘교회 헌법’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 37) 문장 중에 총회에 보고한 것은 ‘판결’이므로 이를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38) 성수는 의사 의결정족수를 포함한 용어이므로 본 조항은 의사 정족수에 관한 내용이므로 본 헌법의 통일성에 의해 ‘개회’ 성수로 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39) 2018년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공포할 때 정치 제21장에서 지교회 재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이 1991년 대법원에 의해 무효판결이 나와 이를 삭제했다. 그리고 정치 제10장 제6조 8항의 규정에서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 역시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29446 판결 참조). 이 규정을 제103회 총회 개정 공포 시 ‘처단’을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로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규정인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 재산에 대하여 쟁론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정치 제12장 제5조 4항)는 형사재판과 같은 총회 내부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권징재판이지 권리주장에 대한 민사재판과 같은 행정재판은 아니다. 따라서 교회 재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권징재판은 가능하므로 본 조항을 “단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권징재판으로 제한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 40) 권징조례에서 ‘원피고’를 ‘원고와 피고’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했다.
- 41)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 보고 시 채용 과정에서 총회가 환부 결정할 때 그 환부가 총회 재판국인지, 원심인지에 대한 문제로 지난 10년 동안 분쟁이 있었고 법원 소송에서도 많은 출혈이 있었다. 더 이상 분쟁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총회 결의로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로 결정함에 따라 명확한 문장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자구를 수정했다.
- 42) 한문 표기를 한글로 전환한 내용으로 이를 한글 의미에 맞게 자구를 수정했다.
- 43) 어린이 세례 추가 삽입

[서문 및 차례]

- 1) ‘총회의 헌법’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으로 수정하여 통일시켰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정치 제12장 1조)이므로 ‘총회의 헌법’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 2) 헌법 서문에서 첫 헌법 제정 부분이 누락되었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18회 회의록」, 10. 1929년 수정 공포된 헌법은 이듬해인 1930년에 「朝鮮예수교長老教會憲法」 修正再版 (京城: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 1930)으로 출판했다. 이 헌법을 제1차 개정헌법이라 한다. 개정 공포는 1929년이지만, 출판은 1930년이다. 따라서 1차 개정판은 개정 공포된 해를 중심으로 1929년판 헌법이라 한다.
- 3) 이 부분은 제1차 개정판에 의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의해 개역한 1934년 판이다. <끝>